

국방부령

군용항공기 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기본정책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항승인 기준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항공안전법상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항공안전법령에서 규정하는 운항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군용기는 항공안전법령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군용항공기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시험내용과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인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군용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제 2조의 2)

나.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에 있어서 관계법령인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내용을 최신화 (제6조, 별표 1)

- 1)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수준을 민간항공교통관제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내용을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의 민간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 2) 「항공법」이 「항공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면제근거를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의 관련조항 내용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20. 5. 27.),

항공안전법('20. 6.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 11.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의견조회 결과
이견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수직 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항공법」 제26조제8호”를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26조제10호”를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26조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 제2호,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 1 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과목	범위
1. 항공법규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2. 관제일반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발동기·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 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3. 항행안전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4.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2)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2. 실기시험의 범위

- 가.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위협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 나.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

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횡수**”를 “**차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항공법 시행규칙」 제6조**”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자격증명 취소를 할**”을 “**자격증명을 취소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1. 「항공법」 제26조제8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전 과목 2. (생략) 3. 「항공법」 제26조제10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 「항공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공기상	<u>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u>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 ----- ----- ----- ----- --. 1. <u>「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u> ----- ----- 2. (현행과 같음) 3. <u>「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u> ----- ----- ----- 4. <u>「항공안전법」 제35조 제1호, 제2호, 제3호</u>----- -----

현행	개정안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제10조(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u>부칙 <제000호, 20 . . . ></u> <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삭제	<u>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신설</u>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가. (생략)
나. 위반행위의 <u>횟수</u> 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간에 같은 행위로 -----	나. 위반행위의 <u>차수</u> 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간에 같은 행위로 -----
다. (생략)	다. (생략)
라. --- 「 <u>항공법 시행규칙</u> 」 제6조를 준용한다.	라. --- 「 <u>항공안전법 시행규칙</u> 」 제7조를 준용한다.
마. --- <u>자격증명 취소를 할 수 있다.</u>	마. --- <u>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u>
바. (생략)	바. (생략)

현행 별표 1

[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과목	범위
1.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2. 항행안전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의 제원·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도의 해독 다. 항법의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마.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 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3.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 통보의 해독과 이용방법 나. 항공기상 관측의 일반지식 다.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4.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업무용 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와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5. 항공교통관제	가. 항로관제절차 나. 접근관제절차 다. 레이더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6. 항공교통관제영어	가. 항공교통관제영어 독해 나. 항공교통관제영어 발음 다. 항공교통관제영어 구사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과목	범위
1. 항공법규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2. 관제일반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발동기·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 능력에 관한 지식(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 및 적용
3. 항행안전시설	가. 항행안전시설의 종류·성능 및 이용방법 나. 항공지도의 해독 다.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4. 항공기상	가. 지구 대기의 구조,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 대기압과 고도측정 2) 일기도 및 바람·구름 3) 기단 및 전선 4) 난기류, 착빙 및 뇌우 5) 열대기상,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5.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 조난·비상·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라.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2. 실기시험의 범위

가.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위협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나.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